

#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007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8. 18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08월 1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개정됨 (2022.1.1.시행, 행정안전부 훈령 제 221호)에 따라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상위개정법령 근거조항 정비 (안 제1조)
-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안 제2조, 제3조)
  - \* 사·군·구 검사위원 수 : 3명 이상 5명 이하 → 3명 이상 10명 이하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가능한 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 맞게 확대하고,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